래미안 용두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www.raemian.co.kr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 - 20602호(2007. 10. 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공 급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80-1번지 일대
- ■ 공급규모 및 내 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9~20층 10개동 844세대중 284세대(재개발조합공급세대중 일반공급분) 및 부대복리시설(임대1개동 210세대 별도)
  (3자녀특별공급 : 79.7000㎡-3세대, 80.3700㎡-1세대, 79.1800㎡-1세대, 111.8200㎡-1세대, 150.5300㎡-1세대, 150.1900㎡-1세대 총 8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 부가세 포함)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층별	향	분양가격			총분양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주지정일)
				세대별 공급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세대별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면적포함)	계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 2008.1.15	2회 2008.5.15	3회 2008.9.16	4회 2009.1.15	5회 2009.5.15	6회 2009.9.15	
민영주택	21426-01	2007000812 (01)	79.7000	59.98	19.72	79.70	45.22	124.92	33.78	2	1	남향	127,093	171,107	298,200	298,200	59,640	29,820	29,820	29,820	29,820	29,820	29,820	59,640
										8	2		132,804	178,796	311,600	311,600	62,320	31,160	31,160	31,160	31,160	31,160	31,160	62,320
										8	3		137,066	184,534	321,600	321,600	64,320	32,160	32,160	32,160	32,160	32,160	32,160	64,320
										8	4		139,922	188,378	328,300	328,300	65,660	32,830	32,830	32,830	32,830	32,830	32,830	65,660
										34	5층이상		142,777	192,223	335,000	335,000	67,000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67,000
										2	2	서향	124,238	167,262	291,500	291,500	58,300	29,150	29,150	29,150	29,150	29,150	29,150	58,300
										2	3		128,500	173,000	301,500	301,500	60,300	30,150	30,150	30,150	30,150	30,150	30,150	60,300
										2	4		131,355	176,845	308,200	308,200	61,640	30,820	30,820	30,820	30,820	30,820	30,820	61,640
										26	5층이상		134,211	180,689	314,900	314,900	62,980	31,490	31,490	31,490	31,490	31,490	31,490	62,980
	21426-02	2007000812 (02)	80.3700	59.90	20.47	80.37	45.16	125.53	33.73	1	2	남동/남서	132,804	178,796	311,600	311,600	62,320	31,160	31,160	31,160	31,160	31,160	31,160	62,320
										1	3		137,066	184,534	321,600	321,600	64,320	32,160	32,160	32,160	32,160	32,160	32,160	64,320
										1	4		139,922	188,378	328,300	328,300	65,660	32,830	32,830	32,830	32,830	32,830	32,830	65,660
										16	5층이상		142,777	192,223	335,000	335,000	67,000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67,000
										1	2	남서	128,500	173,000	301,500	301,500	60,300	30,150	30,150	30,150	30,150	30,150	30,150	60,300
										1	3		132,804	178,796	311,600	311,600	62,320	31,160	31,160	31,160	31,160	31,160	31,160	62,320
										1	4		135,660	182,640	318,300	318,300	63,660	31,830	31,830	31,830	31,830	31,830	31,830	63,660
										16	5층이상		138,515	186,485	325,000	325,000	65,0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65,000
	21426-03	2007000812 (03)	79.1800	59.96	19.22	79.18	45.21	124.39	33.77	1	2	남향	132,804	178,796	311,600	311,600	62,320	31,160	31,160	31,160	31,160	31,160	31,160	62,320
										1	3		137,066	184,534	321,600	321,600	64,320	32,160	32,160	32,160	32,160	32,160	32,160	64,320
										1	4		139,922	188,378	328,300	328,300	65,660	32,830	32,830	32,830	32,830	32,830	32,830	65,660
										13	5층이상		142,777	192,223	335,000	335,000	67,000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67,000
										1	2	서향	124,238	167,262	291,500	291,500	58,300	29,150	29,150	29,150	29,150	29,150	29,150	58,300
										1	3		128,500	173,000	301,500	301,500	60,300	30,150	30,150	30,150	30,150	30,150	30,150	60,300
										1	4		131,355	176,845	308,200	308,200	61,640	30,820	30,820	30,820	30,820	30,820	30,820	61,640
										13	5층이상		134,211	180,689	314,900	314,900	62,980	31,490	31,490	31,490	31,490	31,490	31,490	62,980
	21426-04	2007000812 (04)	112.3300	84.97	27.36	112.33	64.06	176.39	47.85	1	1	남동/남서	193,453	260,447	453,900	453,900	90,780	45,390	45,390	45,390	45,390	45,390	45,390	90,780
										1	1	남서	186,932	251,668	438,600	438,600	87,720	43,860	43,860	43,860	43,860	43,860	43,860	87,720
	21426-05	2007000812 (05)	111.8200	84.96	26.86	111.82	64.05	175.87	47.85	6	2	서향	189,105	254,595	443,700	443,700	88,740	44,370	44,370	44,370	44,370	44,370	44,370	88,740
										6	3		195,626	263,374	459,000	459,000	91,800	45,900	45,900	45,900	45,900	45,900	45,900	91,800
										6	4		199,974	269,226	469,200	469,200	93,840	46,920	46,920	46,920	46,920	46,920	46,920	93,840
										10	5층이상		204,321	275,079	479,400	479,400	95,880	47,940	47,940	47,940	47,940	47,940	47,940	95,880
	21426-06	2007000812 (06)	150.5300	114.98	35.55	150.53	86.70	237.23	64.75	2	1	남동/남서	265,353	357,247	622,600	622,600	124,520	62,260	62,260	62,260	62,260	62,260	62,260	124,520
										3	2		277,244	373,256	650,500	650,500	130,100	65,050	65,050	65,050	65,050	65,050	65,050	130,100
										3	3		286,194	385,306	671,500	671,500	134,300	67,150	67,150	67,150	67,150	67,150	67,150	134,300
										3	4		292,161	393,339	685,500	685,500	137,100	68,550	68,550	68,550	68,550	68,550	68,550	137,100
										16	5층이상		298,127	401,373	699,500	699,500	139,900	69,950	69,950	69,950	69,950	69,950	69,950	139,900
										2	1	남서	253,419	341,181	594,600	594,600	118,920	59,460	59,460	59,460	59,460	59,460	59,460	118,920
										3	2		268,336	361,264	629,600	629,600	125,920	62,960	62,960	62,960	62,960	62,960	62,960	125,920
										3	3		277,244	373,256	650,500	650,500	130,100	65,050	65,050	65,050	65,050	65,050	65,050	130,100
										3	4		283,210	381,290	664,500	664,500	132,900	66,450	66,450	66,450	66,450	66,450	66,450	132,900
										15	5층이상		289,177	389,323	678,500	678,500	135,700	67,850	67,850	67,850	67,850	67,850	67,850	135,700
	21426-07	2007000812 (07)	150.1900	114.96	35.23	150.19	86.68	236.87	64.74	2	2	남향	277,244	373,256	650,500	650,500	130,100	65,050	65,050	65,050	65,050	65,050	65,050	130,100
										2	3		286,194	385,306	671,500	671,500	134,300	67,150	67,150	67,150	67,150	67,150	67,150	134,300
										1	4		292,161	393,339	685,500	685,500	137,100	68,550	68,550	68,550	68,550	68,550	68,550	137,100
										2	1	서향	247,452	333,148	580,600	580,600	116,120	58,060	58,060	58,060	58,060	58,060	58,060	116,120
										2	2		259,386	349,214	608,600	608,600	121,720	60,860	60,860	60,860	60,860	60,860	60,860	121,720
										2	3		268,336	361,264	629,600	629,600	125,920	62,960	62,960	62,960	62,960	62,960	62,960	125,920
										2	4		274,260	369,240	643,500	643,500	128,700	64,350	64,350	64,350	64,350	64,350	64,350	128,700
										26	5층이상		280,227	377,273	657,500	657,500	131,500	65,750	65,750	65,750	65,750	65,750	65,750	131,5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선택 옵션판매가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주택형(㎡)	확장면적(㎡)	확장공사비		확장부위	확장형 선택 옵션		기타 선택 옵션						비 고
		확장공사	㎡단가		거실아트월 + 거실장	홈오피스 거실/침실	천정형에어컨 거실2,침실1	1개소 추가	2개소 추가	3개소 추가	4개소 추가	안방 붙박이장	
79.7000	10.58	8,800,000	831,758	거실,침실1	3,000,000	2,400,000	4,300,000	5,600,000	6,900,000			2,400,000	○ 확장형 선택옵션 선택은 발코니확장 선택시에 한함 ○ 천정형에어컨 침실2,3,4,주방 4개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음 - 개소 추가별 금액은 실외기/실내기 용량변동 등을 감안하여 반영함 - 4개소 설치시 실외기가 1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함 (민대가포함)
80.3700	16.99	12,700,000	747,499	거실,침실1,2	3,000,000	2,400,000	4,300,000	5,600,000	6,900,000			2,400,000	
79.1800	10.33	9,000,000	871,249	거실,침실1	3,000,000	2,400,000	4,300,000	5,600,000	6,900,000			2,400,000	
112.3300	16.79	13,000,000	774,270	거실,침실1,2	3,600,000	2,500,000	4,300,000	5,600,000	8,200,000			2,500,000	
111.8200	19.36	13,800,000	712,810	거실,침실1,2	3,600,000	2,500,000	4,300,000	5,600,000	8,200,000			2,500,000	
150.5300	25.10	21,700,000	864,542	거실,침실1,2,3	4,200,000	2,600,000	4,400,000	5,800,000	8,400,000	9,800,000	11,300,000	2,600,000	
150.1900	29.87	21,200,000	709,742	거실,주방,침실1,2,3	4,200,000	2,600,000	4,400,000	5,800,000	8,400,000	9,800,000	11,300,000	2,6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부가가치세 포함)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선택 옵션사항은 필수사항이 아님.(입주자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임.)

■ 공통사항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 시행령 42조의 3 의거)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가격이며, 세대별 분양가격은 층별, 향별, 개방감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오니 견본주택이나 배포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장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상기 아파트는 최초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3자녀 특별공급

- 신청일시/장소 : 2007. 10. 9 (10:00 ~ 14:00) / 당사 견본주택
- 당첨자 발표 : 2007. 10. 9 (16:00) / 당사 견본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07.10. 2)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 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 호적등본 1통(자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자,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 인감도장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50%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
- 거주지역별 3자녀 특별공급 세대수

래 미 안 용 두 (3자녀 특별공급)	구 분	79.7000㎡	80.3700㎡	79.1800㎡	111.8200㎡	150.5300㎡	150.1900㎡	계
	서울시 거주자	2	1	1	1	1	1	7
	경기도 거주자	1						1
	계	3	1	1	1	1	1	8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3자녀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여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평 점 요 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100			
자녀수(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 :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을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2)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7.10. 2)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의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치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3)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전용면적)	청 약 관 련 예 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 / 시간	추첨 및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80.8.29 이전 국민은행(舊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1순위가 되신 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7. 10. 10	- 접수 장소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 KB모바일 청약 : 아래의 청약신청 안내 참조 - 접수 시간 : 08:30 ~18:00	- 일시 : 2007. 10.18 - 장소 : 당사견본주택 및 래미안 홈페이지 - 2007. 10. 18 파이낸셜 뉴스신문에 게재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주택형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1주택 소유로 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 청약 불가함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1년이 경과한분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9.5 포함)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2007. 10. 11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 (단, 1주택 소유로 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 청약 불가함)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7. 10. 12	- 접수장소 : · 국민은행인터넷/ KB모바일 - 접수시간 : 08:30 ~18:0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 하시기 바람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창구 접수시간 : 09:30~16:30)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75%	50%
추첨제	25%	50%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 수	가점구분	점 수	확인할 서류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미만	2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등 - 호적등본(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이상 ~ 2년미만	4	9년이상 ~ 10년미만	20	
		2년이상 ~ 3년미만	6	10년이상 ~ 11년미만	22	
		3년이상 ~ 4년미만	8	11년이상 ~ 12년미만	24	
		4년이상 ~ 5년미만	10	12년이상 ~ 13년미만	26	
		5년이상 ~ 6년미만	12	13년이상 ~ 14년미만	28	
		6년이상 ~ 7년미만	14	14년이상 ~ 15년미만	30	
		7년이상 ~ 8년미만	16	15년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호적등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17	6월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	

2)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3)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4)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 안내

구 분		국 민 은 행 (舊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공 통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분(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KB 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Mbank 전용휴대폰 중 WIPI폰 기종만 이용가능)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KB 모바일 청약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뱅킹 접속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주택청약신청	

■ 경과기간 및 요건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분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2) 큰 주택으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면적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면적만 신청 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1순위 청약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접수 방법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특별공급(3자녀 이상)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일반공급 :
  - 공통 :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당 아파트는 2007.9.1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없이 인터넷(창구 신청자: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입력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전에 정확히 파악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 단위) 의 전입일을 기재
  - 가점항목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참조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창구 청약자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 : 국민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서명 • 배우자가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한 호적등본 등)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제 3 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200만원	400만원	창구청약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 비 서 류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07.10.19)이후 (평일 09:30 ~ 16:30)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환불시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구비 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 2007.10. 9(16:00)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신청자의 입회 하에 동·호수를 결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과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공 통	•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재개발 조합원에 기 배정된 동·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동·호수에 대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를 결정함.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10년 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예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인정하지 않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건축 : 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 이십칠억이천육백이십사만일백육십오원정 (₩2,726,240,165 VAT포함)
- 전기, 통신, 소방 : (주)아이비엔지니어링 / 칠억삼천삼백만원정(₩733,000,000 VAT별도)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 당첨자 2007.10.24 ~ 10.26 3일간, 평일 09:30~16:30
-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 은행명 - 국민은행(계좌번호 : 033201 - 04 - 089066) 예금주 : 용두1재개발
- 융자 알선 : 계약금 20% 납입 후 전체분양대금의 40% 범위내에서 융자 알선
  (단, 개인별 총 부채상환비율(DTI), 개인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등)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약정된 분양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 ※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없이 임의분양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KB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용) 1통 • 계약금(수도권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인감도장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1통, 초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호적등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호적등본 1통(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의 경우 및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등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1,2,3순위 당첨자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3자녀 특별공급당첨자 중 다음에 해당될 경우 향후 특별공급 자격박탈 및 일반청약 자격이 제한됨.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된 이후 14일간의 소명기간 안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와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7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국민은행	033201 - 04 - 089066	용두1재개발

■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선택 옵션 대금 납부계좌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래미안 용두	국민은행	033201 - 04 - 089079	삼성물산㈜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서 번 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101,887,760,000	제01282007-101-0013800호

■ 분양보증약관중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유의사항

1. 부대복리시설 : 노인정,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등
2. 청약시 신청한 내용과 민영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창구청약자 :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4.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5.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및 계약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순위가 제한됨.
6.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7.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8.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서명>은 신청자의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은행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9.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10.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11.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12.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함.
13.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4.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15.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16.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17.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19. 마감자재내용은 형별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20.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
21.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2. 일반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재개발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23.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시 별도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분양시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에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24. 확장형은 평면 및 형별 특성에 따라 청소용 수전이 설치되지 않을수 있음. 25.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후면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26. 배치상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27. 분양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8.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관리동 및 노인정 등의 설치로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9.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30. 단지의 배치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 31.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32.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음.
33.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4. 단지 외각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인.허가과정 또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35.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관내 모형 참조)
36.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7.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공원 디자인과 연계되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8. 측량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수경시설,조경시설,포장 등), 단지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39. 사업부지 서측에 고가도로인 내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소음및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계약체결 바라며, 동 도로와 근접한 104동, 106동, 108동, 110동 당첨자는 특히 이를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입주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0. 사업부지 남서측 공원지하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폐기물 종합처리시설)가 건립예정('09.8월)있어 향후 냄새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계약체결 바라며, 환경자원센터와 근접한 101동, 102동, 103동 당첨자는 특히 이를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입주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1.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인허가,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체),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발코니 앞에 장식물이 추가 부착될 수 있고, APT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3. 대피공간의 창호는 열림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4. 보일러실의 점검구 문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5.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6.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 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함
47.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48.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9. 단지내 북동측에 주택형 57.81㎡ 임대아파트 1개동 210세대가 건립됩니다.
50. 사업부지 주변에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어 특히 인접동의 경우 경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래미안 용두 분양계약서 설계관련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단지명은 사용승인 후 공부 및 아파트 측벽에 래미안 용두로 명시됩니다.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 민 은 행	금 융 결 제 원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이용기간	2007. 10. 18 ~ 10. 27 (10일)	2007. 10. 18 ~ 10. 27 (10일)
전화(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 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번호	전화 1588-9999 (서비스코드 701)	전화 1369(서비스코드 5#)
	이용시간	2007. 10. 18 ~ 10. 27 (10일)	2007. 10. 18 ~ 10. 27 (10일)
KB모바일	이용방법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이용기간	2007. 10. 18 ~ 10. 27 (10일)	-
휴대폰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2007. 10. 18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사업주체명 : 용두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록번호 : 264171-0006299)
- ■ 시공업체명 : 삼성물산㈜ 건설부문(주택건설지정업 지정번호 제48호)
-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114-2번지 래미안 갤러리 [☎ 02-765-3327, 1588-3588]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래미안 용두 현장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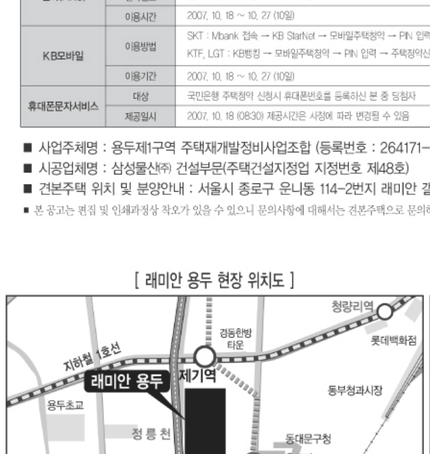

[운니동 래미안갤러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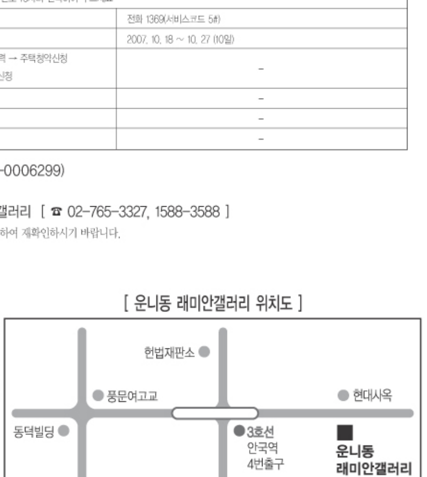

시행사 용두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삼성물산 건설부문

분양문의 02-765-3327 고객센터 1588-3588